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85호 2010. 10. 4.(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49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50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 ----- 2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062호 공시송달 공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065호 공시송달 공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06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0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49호

##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검암1지구, 연희지구, 가좌동, 석남동, 경서동 일원에 재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149점)을 고시합니다.

2010. 9. 30.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 개 요

1.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X좌표(m)	Y좌표(m)
별지참조			

###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재지 : 인천 서구 검암1지구, 연희지구, 석남동, 가좌동, 경서동 일원
- 측량연월일 : 2010년 8월 14일(지적도근점 149점)

### 4. 측량성과보관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사

### ■ 열람안내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50호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월 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한일베라체아파트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주)무궁화신탁 대표 송인명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서구 당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2블록 1~14로트
  - 나. 대지면적 : 25,062.50m<sup>2</sup>
  - 다. 연 면 적 : 69,672.9566m<sup>2</sup>
  - 라. 사 업 비 : 160,859,950,000원
  - 마. 사업규모 : 지상15층 9개동 425세대 및 지하2층 지상1층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 : 2010.10. ~ 2012.10.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 나.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 별 지 】

##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일련번호	명 칭	중부좌표(계양좌표)		비고
		X	Y	
4590	지적도근점	451620.74	171379.75	중부
4591	지적도근점	451539.70	171419.13	중부
4730	지적도근점	451464.08	171085.96	중부
4717	지적도근점	451339.86	171206.24	중부
4704	지적도근점	451289.65	171360.50	중부
4705	지적도근점	451279.82	171302.79	중부
4625	지적도근점	450514.64	170884.37	중부
4626	지적도근점	450469.72	170873.57	중부
4634	지적도근점	450246.89	170856.68	중부
4635	지적도근점	450308.96	170942.00	중부
4636	지적도근점	450327.73	170976.42	중부
4637	지적도근점	450345.87	171130.83	중부
4638	지적도근점	450386.65	171183.44	중부
4671	지적도근점	450708.40	171148.18	중부
4678	지적도근점	450783.03	171313.06	중부
763	지적도근점	449481.94	170830.19	중부
774	지적도근점	449486.61	171002.22	중부
786	지적도근점	449548.60	170998.28	중부
816	지적도근점	449549.87	171073.54	중부
815	지적도근점	449574.11	171073.66	중부
822	지적도근점	449635.22	171072.70	중부
508	지적도근점	449717.26	171188.63	중부
516	지적도근점	449341.84	171072.25	중부
551	지적도근점	449783.99	171378.65	중부
552	지적도근점	449706.06	171377.47	중부
553	지적도근점	449626.62	171375.55	중부
554	지적도근점	449494.37	171373.21	중부

556	지적도근점	449337.41	171369.13	중부
557	지적도근점	449334.72	171244.97	중부
560	지적도근점	449339.05	171160.38	중부
567	지적도근점	449706.45	171319.57	중부
568	지적도근점	449716.85	171261.82	중부
605	지적도근점	448870.79	171432.17	중부
615	지적도근점	449311.95	171453.85	중부
617	지적도근점	449493.12	171457.33	중부
618	지적도근점	449602.28	171461.73	중부
619	지적도근점	449645.12	171462.51	중부
622	지적도근점	449693.63	171661.26	중부
624	지적도근점	449788.59	171667.21	중부
625	지적도근점	449825.19	171664.68	중부
626	지적도근점	449819.49	171705.75	중부
628	지적도근점	449692.82	171701.33	중부
629	지적도근점	449690.97	171739.21	중부
630	지적도근점	449745.96	171742.44	중부
636	지적도근점	449755.75	171782.50	중부
646	지적도근점	449912.50	171789.60	중부
647	지적도근점	448881.41	171497.19	중부
650	지적도근점	448841.69	171632.06	중부
657	지적도근점	449143.26	171697.56	중부
658	지적도근점	449136.53	171763.82	중부
666	지적도근점	449702.67	171462.50	중부
676	지적도근점	449906.82	171698.82	중부
678	지적도근점	449767.76	171537.86	중부
679	지적도근점	449765.34	171501.61	중부
680	지적도근점	449788.48	171502.83	중부
747	지적도근점	449897.54	170931.67	중부
751	지적도근점	449718.72	171133.07	중부
756	지적도근점	449840.17	170974.63	중부
776	지적도근점	449810.44	170713.63	중부
779	지적도근점	449750.24	170761.80	중부

781	지적도근점	449723.53	171068.99	중부
782	지적도근점	449725.20	171009.11	중부
790	지적도근점	449294.88	170919.15	중부
800	지적도근점	449743.18	170721.30	중부
802	지적도근점	449682.23	170766.33	중부
803	지적도근점	449816.04	170809.21	중부
808	지적도근점	449722.80	170977.98	중부
825	지적도근점	449436.54	171002.91	중부
826	지적도근점	449431.27	170948.03	중부
829	지적도근점	449334.82	170881.32	중부
828	지적도근점	449388.41	170883.91	중부
838	지적도근점	449243.08	170954.26	중부
721	지적도근점	450060.02	172308.57	중부
722	지적도근점	450020.06	172304.53	중부
723	지적도근점	449990.89	172266.35	중부
733	지적도근점	449861.24	172266.36	중부
734	지적도근점	449905.82	172266.81	중부
737	지적도근점	449809.79	172120.16	중부
738	지적도근점	449848.60	172093.28	중부
739	지적도근점	449855.25	172059.71	중부
740	지적도근점	449833.32	172022.58	중부
741	지적도근점	449829.51	172004.25	중부
724	지적도근점	449951.50	171874.80	중부
725	지적도근점	449947.09	171918.78	중부
726	지적도근점	449949.60	172009.76	중부
727	지적도근점	449948.59	172066.11	중부
742	지적도근점	449840.20	171950.29	중부
743	지적도근점	449811.56	171932.32	중부
744	지적도근점	449811.28	171913.12	중부
745	지적도근점	449814.86	171870.43	중부
846	지적도근점	448808.03	170845.63	중부
854	지적도근점	448841.37	170843.09	중부
855	지적도근점	448842.12	170864.10	중부

849	지적도근점	448778.06	170935.09	중부
850	지적도근점	448834.17	170941.20	중부
853	지적도근점	448875.27	170946.04	중부
852	지적도근점	448879.27	170861.64	중부
851	지적도근점	448880.95	170799.70	중부
772	지적도근점	448943.75	170858.42	중부
526	지적도근점	448942.32	170990.04	중부
536	지적도근점	448918.80	171348.70	중부
535	지적도근점	448727.53	171339.35	중부
538	지적도근점	448861.13	171282.69	중부
596	지적도근점	448799.29	171074.24	중부
3147	지적도근점	-3895.92	-4607.74	계양
3149	지적도근점	-4108.49	-4648.01	계양
3151	지적도근점	-4283.02	-4638.49	계양
3154	지적도근점	-4467.56	-4660.14	계양
355	지적도근점	-4497.27	-4368.43	계양
356	지적도근점	-4407.94	-4367.48	계양
357	지적도근점	-4360.32	-4362.39	계양
3156	지적도근점	-4366.03	-4492.99	계양
3155	지적도근점	-4418.87	-4582.21	계양
4413	지적도근점	-5505.40	-4452.11	계양
4411	지적도근점	-5491.27	-4683.08	계양
3162	지적도근점	-5325.25	-4675.91	계양
3161	지적도근점	-5132.70	-4683.68	계양
3160	지적도근점	-4972.64	-4677.72	계양
3159	지적도근점	-4822.44	-4672.12	계양
3158	지적도근점	-4629.43	-4665.03	계양
1065	지적도근점	-5351.85	-5775.39	계양
1064	지적도근점	-5294.20	-5645.97	계양
1063	지적도근점	-5243.32	-5526.10	계양
1062	지적도근점	-5304.97	-5507.70	계양
1061	지적도근점	-5332.25	-5482.63	계양
1060	지적도근점	-5496.57	-5485.26	계양

1059	지적도근점	-5641.64	-5487.44	계양
1058	지적도근점	-5792.15	-5485.76	계양
453	지적도근점	-5996.68	-5485.95	계양
184	지적도근점	-7090.13	-4443.08	계양
183	지적도근점	-7006.26	-4441.09	계양
1040	지적도근점	-6997.83	-4745.05	계양
1042	지적도근점	-6542.25	-4730.59	계양
1043	지적도근점	-6258.25	-4713.72	계양
1044	지적도근점	-6103.67	-4690.65	계양
456	지적도근점	-5993.23	-4687.82	계양
190	지적도근점	-5970.21	-4160.06	계양
1047	지적도근점	-6089.56	-4152.72	계양
1049	지적도근점	-5982.48	-4909.79	계양
4100	지적도근점	-5977.91	-5098.24	계양
454	지적도근점	-5984.96	-5231.63	계양
1056	지적도근점	-5985.35	-5364.65	계양
1055	지적도근점	-5781.48	-5361.46	계양
1054	지적도근점	-5641.65	-5362.09	계양
285	지적도근점	-5259.22	-3198.01	계양
286	지적도근점	-5389.94	-3212.34	계양
287	지적도근점	-5383.90	-3326.04	계양
288	지적도근점	-5560.90	-3335.25	계양
493	지적도근점	-5566.20	-3220.29	계양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062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06호(2008.6.16)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가좌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소유자에게 등기 송달하여 손실보상 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협의 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8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좌완충녹지 3단계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19-3번지 일원
4. 협의 기간 : 2010. 9. 28 ~ 2010. 10. 12
5. 협의 및 계약체결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 5층 녹지경관과
6. 보상 방법 : 본인과의 대면 협의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계좌입금
7. 대상물건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소유자	주소	비고
1	인천 서구 가좌동	319-14	토지 및 물건 등 (원본: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비치)	박정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19-14	

8. 보상협의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단 세입자 및 물건 등 보상자는 1부(일반용)  
(토지주는 부동산매도용 1부(매수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일반용 1부)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임야)대장 각 필지별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전주소 포함)
  - 지참물 : 인감도장, 예금통장, 신분증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032-560-4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065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제4차, 5차, 6차, 11차, 12차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해당서류가 반송되거나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3.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수용재결 제4차, 5차, 6차, 11차, 12차)
  4. 공 고 기 간 : 2010. 09. 29. ~ 2010. 10. 14.
  5. 공고대상자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6. 재결서 교부 및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902~3)
- ※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0. 9. 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대상내역(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연번	재결구분	재결차수	재결일자	이름	발송주소	비고
1	이의	12차	2010.07.23	장래홍	인천 남구 용현동 611-4	
2	이의	12차	2010.07.23	이상복	인천 서구 가정동 284-107 가정빌라 씨-301	
3	이의	12차	2010.07.23	인천광역시 서구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1-453	
4	이의	12차	2010.07.23	최영구	인천 서구 가정동 493-18 태양맨션 1-201	
5	이의	12차	2010.07.23	강병희	인천 서구 가정동 530-1 전인빌라 가동 302호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1069호

##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입안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73번지 일원
- 규 모 : L=112m, B=8m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6	8	국지 도로	112	소로 3-3	검암동 253-14	일반 도로			

#### ○ 결정사유서

신설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소로3-6호선	B=8m L=11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암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국공장 진입도로가 폐지였으므로</li> <li>·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국공장 진입이 용이한 대체도로 신설</li> </ul>

## ○ 편입토지조서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검암동	○○						
2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조경과(032-560-4803)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0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취지

- 「어선법」 제39조에서 어선의 등록과 변경등록 선박국적증명·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어선의 건조·개조허가(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 마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제증명 등 수수료(별표 1) 신설 규정
  - 어선의 등록 및 재교부 건·개조(발주)허가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함
    - 어선의 등록 및 변경등록 : 1,500원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 500원
    - 면허,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 1,000원, 개조허가 : 500원
    -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 1,600원, 개조허가 : 800원
    -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 건조허가 : 2,000원, 개조허가 : 1,000원

### □ 제증명 수수료의 면제대상자 확대 (제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으로 확대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참조 : 세무과장 전화 560-419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323 서구청 세무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
9.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10.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11.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 때의 정정청구

12.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중 제6호의 (14) 낚시어선업 신고 다음에 (15)부터 (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요액	비 고
(15) 어선의 등록 및 변경등록	1건	1,500원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6)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1건	500원	
(17)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1건	1,000원	
(18)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1건	500원	
(19)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1건	1,600원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20)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1건	800원	
(21)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1건	2,000원	
(22)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1건	1,000원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